

제 875 호
1981.12. 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편집 : 공 보 관 이 용 우
전화 72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2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	례	
제 1563 호 :	서울특별시농지세 감면예 관한특별조례	3
◎ 훈	령	
제 553 호 :	서울특별시과징기관과공무원의실적관리및평가에 관한 규정중개정규정	4
제 554 호 :	서울특별시채권관리규정중개정규정	4
◎ 고	시	
제 428 호 :	다동구역제 10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	5
제 429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증	12
제 544 호 (동대문구청) :	광고물계획정미지구지정고시	13

〈이면계속〉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◎	공	고	
	제 350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	14
	제 351 호 :	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	17
	제 354 호 :	환지계획변경및환지처분공고	17
	제 355 호 :	동행요청수리가에관한공고	18

◎ 사 령

조 제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농지세 감면에 관한 특별조례들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5일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563 호

서울특별시 농지세 감면에 관한 특별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감면대상) 이 조례에 의한 감면은 법제 211 조의 규정에 의한 감류 또는 울류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을 성장하여 얻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감면범위) ① 감류 농지세는

법제 2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법제 2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중 1,150,000 원을 본세한 금액에 법제 213 조 제 1 항제 1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한다.

② 울류 농지세는 법제 21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법제 2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중 340,000 원을 공제한 금액에 법제 213 조 제 1 항 제 2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한다.

제 4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1981년 12월 31일 폐지한다.

② (적용대상)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감류 농지세는 1971년분에 한하여 울류 농지세는 1981년도 제 2기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세입금 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1년 12월 5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㉮

㉮ 서울특별시 훈령 제 553 호

서울특별시 세입금 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세입금 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항중 (참고 과징과장)을 삭제한다.

제 3 조 제 1 항중 "과징과장"을 "세무지도과장"으로 한다.

제 5 조 제 3 항중 "세무국장"을 "재무국장"으로 하고 동조 제 5 항중

"세무행정과장"을 "재정과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 10627호 (1981년 11월 9일)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 채권관리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1년 12월 5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㉮

㉮ 서울특별시 훈령 제 554 호

서울특별시 채권관리 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채권관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항중 "과징과장"을 "재정기획과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 10627호

(1981년 11월 9일)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8 호

다동구역 제 10 지구
재개발사업시행인가

1. 건설부고시 제 367 호 (73.9.6) 로 구역 지정되고, 서울시고시제 380 호 (81.10.21) 로 사업계획 결정된 다동구역 제 10 지구에 대하여 동지구내 토지소유자인 롯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일선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이를 동법시행령 제 7 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제 16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.

1981.12. 3.

서울특별시 장

1) 사업의 명칭 : 다동구역 제 10 지구

재개발사업

2) 시행구역 : 중구 다동 5-1, 7-1, 8-1, -2, 9, 10-1, -2, -3, 11-1, -2, 16-2, -3, -4, -5, 18-1, -2, -3, -4, 46, 48, 49, 67-1, -2, -3, -5, -6, -7, 68, 73-1, -2, 74-1, 78, 81, 97-1 (34 필지)

3) 시행면적 : 4,406.7㎡ (1,335.1 평)
대 지 : 2,901.5㎡ (877.7 평)
공공시설 : 1,505.4㎡ (455.4 평)

4) 건축개요 (규모 및 층면적)를 건축허가로 확정한다

- 건축면적 : 1,110㎡ (설계율 : 약 38%)
- 연 면 적 : 24,500㎡ (용적율 : 약 566%)
- 주 용 도 :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
- 층 수 : 지상 15층, 지하 4층

5) 시행기간 : 81.12.3 ~ 84.12.31

6) 시행인가년월일 : 1981.12.3

7)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장남구신사동 339번지

8) 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서울시장남구신사동 339

롯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일선

9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 : 별첨

9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축물의 경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○ 토 지										
번 호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사용또는 수용대상 면적(㎡)	소 유 자		소유권이외권리명세			
					주 소	성 명	권리종목	권 리 자		
					주 소	성 명				
1	다동 5-1	대지	19.8	16.7	신사동 339	롯데건설				
2	7-1	"	30.1	30.1	다동 8	선호석	근저당 130,000,000 원	종로구 접지동 68	(주)고려 무역	
3	8-1	"	99.2	61.7	"	"				
4	8-2	"	99.2	99.2	"	"	근저당 130,000,000 원	"	"	
5	9	"	135.5	135.5	"	"				
6	10-1	"	267.8	267.8	"	"				
7	16-2	"	120.3	120.3	"	"	근저당 160,000,000 원	남대문로 2 가 10-1	(주)서글 신탁은행	
8	81	"	125.6	58.6	"	"				
9	10-2	"	234.7	234.7	구의동 58-10	윤봉연	가 등 기	신사동 339	롯데건설	
10	67-1	"	103.0	103.8	"	"	"	"	"	
11	10-3	"	297.5	297.5	회기동 산 4-51	주용길 외 3	"	"	"	
12	16-3	"	46.6	46.6	"	"	"	"	"	
13	16-5	"	45	45	"	"	"	"	"	
14	18-1	"	27.1	27.1	"	"	"	"	"	
15	11-1	"	130.6	130.6	부산시 중구 범일 동 644-10	국제상사				
16	16-4	"	89.3	89.3	"	"				

19-6 계 975 호 시 1981.12.5

번호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사용 또는 수용대상 면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이의관리명세		
					주 소	성 명	관리종목	관 리 자	
								주 소	성 명
17	11-2	대지	59.8	59.8	명륜동1가160-20	천동순			
18	16-2	"	112.4	112.4	내수동110-44	정 애	가등기	신사동 339	롯데건설
19	18-3	"	79	79	"	"	"	"	"
20	18-4	"	122.3	122.3	"	"	"	"	"
21	67-2	"	107.1	107.1	"	"	"	"	"
22	67-7	"	8.2	8.2	"	"	"	"	"
23	46	"	138.8	138.8	명륜동1가2	원봉락			
24	48	"	320.7	320.7	이촌동300-10	박성희			
25	49	"	353.7	353.7	태평로1가61-21	최상선			
26	67-3	"	164.3	149.8	쌍문동533-9	김길한	"	신사동 339	롯데건설
27	67-5	"	129.5	129.2	마포구연남동 299-2	장채선			
28	67-6	"	137.5	133.9	종로구누상동 29-3	장태환외1	근저당 10,000,000원	남대문로2가 10-1	서울신탁 은행
29	68	"	148.8	110.3	여의도동1-111 공작아파트 508	한성희	가등기	신사동 339	롯데건설
30	73-1	"	135.5	105.6	"	"	"	"	"
31	73-2	"	165.4	14.2	"	서울시			
32	97-1	도로	2,446	264.5	"	"			
33	74-1	대지	284.3	29.4	신당동333-12	은철환			
34	78	"	429.8	403.5	잠실동1가33-6	김기환			

제 875호
시
보
1981.12.5
19-7

나. 건축물				
번호	지 번	용도	구 조	면 적 (평)
1	중구다동 8-1	점포및 주택	연와조와즙 2층 전 1층 2층 내역: 점포 1층 (22,395)	22,395 16.16
2	" 8-2	점 포	연와조 와즙 평가전 지 하 실	17 2
3	" 9	주 택	연와조 와즙 평가전	20.8
4	" 10-1	공 장	브릭크조 스테트평가전	24.24
5	" 16-2	영업소	연와조 와즙 평가전	36
6	" 81	영업소 및주택	연와조 평옥개 및 목조와즙 1층 2층	27.6 25.6
7	" 10-2	주 택 주 택 주 택	목조와즙 평가전 " "	7 23 2
8	" 67-1	주 택	목조와즙 평가전	16
9	" 10-3	본 가 부속이가	목조와즙 평가전 외 지하실 목조와즙 평가전	21 6 13
10	" 16-3 16-5 양지상	영 업	세멘트 부릭크조와즙 평가전	15.42
11	" 18-1	주 택	목조와즙 평가전	18.28
12	다동 11-1	본 가 부속이가	목조와즙 평가전 목조와즙 2개전의 2개평 외 지하실	8 20 3 1

소 유 자		소 유 권 이 외 의 파 리 명 세		
주 소	성 명	관 리 자		관 리 명 세
		주 소	성 명	
다동 8	선호석			
강남구신사동 339	롯데건설	송로구건저동 68	(주)교려무역	근저당 130,000,000 원
다동 8	선호석			
'	'			
'	'	중구남대문로 2가 10-1	(주)서울신택은행	근저당 130,000,000 원
'	'			
구이동 58-10	윤봉연	강남구신사동 339	(주)롯데건설	가등기
'	'	'	'	'
회기동산4-51	주용진의 3	'	'	'
'	'			
'	'			
부산시중구법일동 644-10	국제상사			

번호	지 번	용 도	구 조	면 적 (평)
13	다동 16-4	영업용	목조와즙 평가건	19
14	" 11-2	본 가	목조와즙 평가건	33.35
15	" 18-2	점포 및 식당부 속물치	목조와즙 평가건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	18 1
16	" 18-3	영업용	목조와즙 평가건	25.14
17	" 18-4	점포 및 식당부 속물치	목조와즙 평가건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	18.287 1.95
18	" 67-2	식 당	목조와즙 평가건	17.73
19	" 46	영 업	목조와즙 평가건	20
20	" 48	영 업	철근콘크리트조 스테트즙 1층 2층	47.88 47.88
21	" 49	영업용기 부속물치	목조와즙 평가건 연와조 육옥근평가건	59 2
22	" 67-3	주 택	목조와즙 평가건	21
23	" 67-5	영 업 소	철근콘크리트평육 개 1층 2층 - 5층 육탑 지하실	30.70 127.32 23.03 25.6
24	" 67-6	주 택	목조와즙 평가건	23
25	" 68	"	"	22
26	" 73-1	영 업	"	17
27	" 78	여 관 부속건물 " "	" " " "	24.64 14.96 6.38 1.21
28	" 7-1	점 포	연와조와즙 2개진	18

소 유 자		소유권이외의관리명세		
		관 리 자		관 리 명 세
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부산시중구 범일동 644-10 명륜동 1가 160-20	국제상사 천동순			
내수동 110-44	정 아	강남구신사동 339	(주)롯데건설	가등기
"	"	"	"	"
"	"	"	"	"
"	"	"	"	"
명륜동 1가 2	원봉락			
신당동 3'0-82	송기성외1			
태평로 1가 61-21	최상선			
쌍문동 533-9	김길환	"	"	"
마포구연남동 229-2	장채선			
종로구누상동 29-3	장태환	중구남대문로 2가 10-1	(주)서울신 락은행	근저당 10,000,000 원
여의도동 1-111 공작아파트 508호	한정외	강남구신사동 339	(주)롯데건설	가등기 "
"	"	"	"	"
잠충동 1가 33-6	김기안			
다동 8	선호석	종로구견지동 68	(주)고려무역	근저당 130,000,000 원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9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
실시계획인가증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4 호 (76. 11.30)에 의한 시설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0 호 (77.8.11)로 지적 고시된 영등포구 사행, 대림1동지내포장공사(2차)의 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시행령 제 27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함.
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하고 있음.

1981. 12. .
서울특별시장

· 다 음 ·

1. 사업시행의 위치 : 영등포구 대림 1동, 신길 5동
 [시점 : 영등포구 대림 1동 908-12번지앞
 종점 : 영등포구 대림 1동 906-29번지앞 (신길 5동 414-46앞)]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대림 1동지내

포장공사 (2차)

3. 사업의 규모 : 폭 8-10 m 연장 350m 면적 15.5a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 - 1981. 12. 30.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 토지조서 참조
 별첨 : 토지조서 1부.

인 가 증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증

1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대림 1동, 신길 5동
 [시점 : 영등포구대림 1동 908-12번지앞
 종점 : 영등포구대림 1동 906-29번지앞 (신길 5동 414-46앞)]
2. 사업의 종류 : 및 명칭 : 대림 1동지내포장공사 (2차)
3. 사업규모 : 도로포장 폭 8 - 10 m 연장 350 m 면적 15.5a
4. 사업의시행자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- 1981, 12. 30.
6. 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고시제 호

<p>7. 수공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, 지번, 지목 소유권이의의 권 리의 명세: 별첨 사유참조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별첨 설계도 서와 같이 인가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.12. 서울특별시장 토 지 조 서</p>	<p>(인가조건)</p> <p>가. 사업실시 관료후 지체없이 사 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나. 별첨 개략 설계도서(경관도) 에 의하여 시공 설계도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.</p>
--	--

일련 번호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면적	건입 면적	실제이용 상황	소유자		비고
						성명	주소	
1	대림동 908-7	답	3.0㎡	3.0㎡	도로	마홍욱	동작구본동	토지대장
2	" 908-12	도	56㎡	56㎡	"	장호영	329	"
	계	2필지		59㎡				

◎ 동대문구청 고시제 544 호

동대문구광고물계획정비
 지구지정고시

1.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
 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
 광고물계획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
 지정 고시한다.

2. 계획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
 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
 될때까지 신규 게시 및 변경행위
 를 할 수 없다.

3. 관계도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
 비치 공람한다.

1981년 11월 23일
 동대문구청장

○ 계획정비지구

노선명	구	간	현 장	비 고
왕산로	신설동 101-7 호에서 (동화빌딩)	용두동 10- (오스카극장)	1.7 km	도로좌우 전면 건물
	1 호까지 이르는 도로양변			

공 고

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350 호

1981.12. 3









서울특별시 장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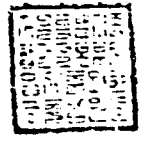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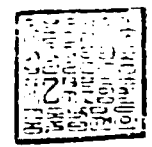
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











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
신조 사용 승인하고 관인규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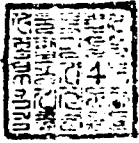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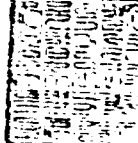
1. 공 인 명 : 별 첨
2. 사용개시일 : 81.12. 3
3. 공인의인영 : 별 첨

공 인 의 인 영

인 영				
공 인 명	서울특별시 종합 건설본부본부장인	서울특별시 종합 건설본부계인	서울특별시 종합 건설본부징수관인	서울특별시 종합 건설본부 경리 관인
인 영				
공 인 명	서울특별시 종합 건설본부 본인경 리관인	서울특별시 종합 건설본부 물 품관리관인	서울특별시 종합 건설본부공사 1부 분 임물품관리관인	서울특별시 종합 건설본부공사 2부 분 임물품관리관인

인 영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3 부분 입물품관리관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4 부분 입물품관리관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5 부분 입물품관리관인	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관리관인
인 영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입금출원인	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입금출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세입세출 현금출납원인	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출납원인
인 영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건설자 계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총무부분 입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1 부분 입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2 부분 입물품출납원인

인 영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3부분 입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4부분 입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5부분 입물품출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1부건설 자재분입물품출납원인
인 영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2부건설 자재분입물품출 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3부건설 자재분입물품출 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4부건설 자재분입물품출 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5부건설 자재분입물품출 납원인
인 영				
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무부입시 전도자금출납원인	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사 1부 입시전도자금 출납원인	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사 2부 입시전도자금 출납원인	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사 3부 입시전도자금 출납원인

인 영			
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4부임시전도자 금출남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사 5부임시전도자 금출남원인	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수도사업특별회계부 임지출원인
<p>○서울특별시공고제 351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·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</p> <p>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~ 정에 의거 K·S 표시정지처분한바있는 아래 사함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</p> <p>허가번호 : 제 340 호 허가일자 : 68.7.2 업 체 명 : 주식회사모나미 대표자 : 송 삼 석 소재지 :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86-308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서울특별시공고제 354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지계획변경및환지처분(김포, 영동 지구도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주공아파트단지) 공고</p> <p>1. 당시가시행한 김포, 영동 1,2 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의 일부토지(주공아파트단지)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별첨도서내용과 같이 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, 56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하고 환지처분하기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.</p>			

2. 환지회정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공람시키고 있으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.

1981.12.5.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명 : 김포, 영등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나. 위치 : (1)김포지구 : 강서구 화곡동, 내발산동 각일부
(2)영등1,2지구 : 강남구 반포동, 잠원동, 역삼동

찰밭동 : 각일부
다. 면적및필지수 : 김포지구 46,387.9 평 (24 필지)
영등1지구 191,992.7평 (84 필지)

○서울특별시공고제 355호

통행료징수허가에 관한공고

도로법제 36조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 3항 (유로도로법제 12조 및 동시행령 8조)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할 것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한다.

1981.12.
서울특별시장

도로의종류	서울특별시도	노선명	원호대로
시설물의명칭	원호대교	시설물의 위치	서울특별시용산구원호로 4가 113번지 - 영등포구여의도동 102번지
통행료의액	2,3륜차 : 100 원 승용차, 버스, 화물차 : 200 원 특수차 (10륜이상) : 200 원	통행료 징수구간	1.47 km
통행료징수방법	현 금 징 수		
통행료징수기간	자 1981년 12월 10일 지 2001년 12월 9일	(20년간)	
통행료징수자	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 120-23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대표 임 원 수		
적 요	통행료징수면제차량 : 유로도로법제 8조, 동시행령제 6조대상차량		

사 령		동 대 문 구 지방지적기원보	은 병 용
<p>◎ 1981년 11월 30일자 령계 495 호</p> <p>운 수 1 과 권 경 근 지방행정주사</p> <p>부 지 과</p>	<p>지적과파견 (81.12.5-82.4.30)</p> <p>서 대 문 구 조 현 우 지방지적기원보</p> <p>지적과파견 (81.12.5-82.4.30)</p>		
<p>◎ 1981년 12월 5일자 령계 505 호</p> <p>영 동 포 구 박 의 영 지방지적기사보</p> <p>지 적 과</p> <p>구 로 구 김 종 혁 지방지적기사보</p> <p>지 적 과</p> <p>구 도 구 이 해 숙 지방지적기원보</p> <p>지적과파견 (81.12.5-82.4.30)</p> <p>성 북 구 이 의 진 지방지적기원보</p> <p>지적과파견 (81.12.5-82.4.30)</p> <p>감 서 구 문 아 란 지방지적기원보</p> <p>지적과파견 (81.12.5-82.4.30)</p>	<p>령계 506 호</p> <p>신 규 홍 창 희</p> <p>지방별정직 (임상심리사) 7 급상당에 입함. 3 호봉을 급함.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.</p> <p>신 규 이 진 희</p> <p>지방별정직 (아동복지자도원) 8 급상당 에 입함. 3 호봉을 급함. 아동상담소 근무를 명함</p> <p>◎ 1981년 12월 7일자 령계 507 호</p> <p>영동포구시민봉사실 유 승 화 지방행정서기</p> <p>내무국 근무를 명함.</p> <p>서울특별시강</p>		